



인권경영 실행지침 부록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규정)

SK케미칼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언어적 괴롭힘 및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괴롭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이러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립한다.

제1장 직장 내 괴롭힘

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원은 다른 사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인정사례, 신고 방법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직장 내 성희롱

④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사원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사원은 다른 사원 뿐 아니라 회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을 포함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3.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인정사례, 신고 방법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